

2016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함.

교육·학습 유형		인정 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 근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 중앙부처 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본	교육시간 100	자체교육기관 및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로 통보 등 근거)		
		전문	교육시간 100			
		기타	교육시간 100			
	민간교육기관 교육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교육수로 통보 등 근거)	
	국내 위탁교육 (사형 재형제 외한 국·비국외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수료증, 교육수로 통보,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교육시간	160		
		1월미만	교육시간	50		
	국외 위탁교육 (사형 재형제 외한 국·비국외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기 관 주 관 교 육	직장교육 (OJT)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행정지원과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멘토링 활동	멘토	1기별 30시간	60		
		멘티	1기별 15시간	15		
	직무 워크숍(예산미팅) (기관 부서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참가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20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간	50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창의활동	발표회에서의 "발표" * 단순참가 인정불가	15시간	50		행정지원과에서 등록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등 정책현장 방문	방문시간		30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장)	입상(대내)	20시간	5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행정지원과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출발보고서 등 첨부)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 등록 불가)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출강)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으로 출강한 경우만 인정	강의시간×2	5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행정지원과 승인 (강제인선, 강의요청 등 첨부)
	재난·재해 대응 및 봉사활동 (실적 증명 가능한 사회봉사활동 또는 부서단위 동아리활동 등)	근무활동기간(월 단위)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행정지원과 승인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첨부)

교육·학습 유형		인정 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 근거		
개 인	사설학원 등 교육(수강)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교육시간	30	LMS에 개인별 등록 (수료증 사본 첨부)	
		전산	교육시간	30		
		어학	교육시간	30		
		기타	교육시간	30		
	대학 대학원(자비 포함) (야간·사이버·방송통신 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LMS에 개인별 등록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첨부)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술사	30	30	LMS에 개인별 등록 (자격증 사본 첨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자격증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학 습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1일 참가시간 5시간 이내)	주제발표시간	참가시간×2	30	LMS에 개인별 (또는 주관부서) 등록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토론	참가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서 (독서감상문 제출)	독서	권당 5시간 (2page 이상, 서식1 활용)	20		LMS에 개인별 등록 (독서감상문 첨부)
		직무관련 저술활동	개인	50		
직무관련 논문게재 등	공동	25	50	LMS에 개인별 등록 → 행정지원과 1차 승인 → (논문 등 관련 증명자료 첨부)		
	논 문 등	일반논문(개인)	25		50	
		일반논문(공동)	15		50	
		석사학위(개인)	50		50	
		박사학위(개인)	75		75	
		컬럼 등(개인)	10		50	
컬럼 등(공동)		5	50			

* 인재개발원 e-자유학습, U-지식여행, 일반직전환, 외국어, 자격증 과정 의 경우

- e-자유학습(기존 열린사이버), U-지식여행
: 각각 연 30시간까지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으로 자동 이수시간 인정
- 일반직전환 : 개인학습(사설학원-직무)
- 외 국 어 : 개인학습(사설학원-어학)
- 자 격 증 : 개인학습(사설학원-기타)으로 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 160시간만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기관주관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훈련부서(인사팀장 협조결재)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직무 워크숍의 경우 이동시간, 산행 등은 학습시간 제외 산정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 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 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개인활동 불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유의사항]

-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4.4.1~2016.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5.4.1~2016.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 개인학습의 대학 대학원(자비 포함,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5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나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이버 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사설학원)으로만 인정
- 재난재해 대응활동의 상시학습 인정은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서식 1>

독서감상문	
도서명	
저자	출판사
작성자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80%로 해서 2page 이상 작성